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42
----------	-----

2024. 7. 22.(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2024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2024년 7월 4일

라. 상정일자: 2024년 7월 15일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국장 박종원)

가. 제안이유

○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간 상호개방하고 연계하여 온마을배움터로 확장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공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기존)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어 신설, 변경

- 온마을배움터 용어 신설
- 마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생태계 등의 용어는 온마을배움터로 확대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

○ 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조항 신설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4년→1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령인구) 감소⁸⁾와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⁹⁾ 극복을 위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책¹⁰⁾ 등을 반영하여, 지역단위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내에서 지역단위로 운영하던 현행 행복교육

8) 2023년도 합계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지.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9)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다음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2021년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하고, 2023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7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충북은 11개 시군 중 제천·단양·보은·옥천·영동·괴산 6곳이 인구감소 지역임.

10)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현 정부 주도의 교육부 정책임. 교육부는 2023년 12월 6일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4년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31개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임.

현재 충북은 충주·제천·옥천·진천·음성·괴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청주·보은·단양·영동·증평은 2차 공모 중에 있음.

지구 사업*을 지역 간 상호 개방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의 장과 교육 주체를 확대하고자, 지역단위 ‘행복교육지구’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명칭을 ‘온마을배움터’로 변경하여,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교육환경이 확대된 ‘온마을배움터’가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북형 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 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교육활동임

충북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별 교육 자원 발굴 및 민·관·학 교육협력 추진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충북행복교육지구 구축기 1.0(2017~2020)을 거쳐,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역과 참여 대상을 확대한 온마을배움터 행복교육지구로의 질적 도약’을 중점 과제로 한 충북행복교육지구 성장기 2.0(2021~2024)이 현재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증평, 괴산, 진천, 음성, 보은, 옥천, 영동 11개 시군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1:1 대응투자로 추진되고 있음

【행복교육지구 지자체 · 교육지원청 간 대응투자 현황】

(2024. 현재)

청주	충주	옥천	괴산	제천	진천	증평	단양	보은	영동	음성
각 7억	각 5억	각 4억	각 3억5천	각 3억			각 2억 5천			

- 이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

하고, ‘온마을배움터’ 용어 정의와 ‘온마을배움터 지정’ 및 ‘온마을 배움터 상호 개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온마을배움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수정·보완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온마을배움터 구축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사료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지구사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질적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지구 사업의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교육력을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충북 교육지구사업의 질적 재구조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구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2023년 10월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교육지구 명칭 변경 찬성이 81.5%로 나타남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이 확대된 교육활동인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교육적 의미와 사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를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온마을배움터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역경계와 교육대상, 참여대상이 확장된 의미를 담아 추진하고자 하는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온마을배움터 참여 대상이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한정되어 해석될 우려가 있어 온마을배움터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마련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에는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마을’,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안 제1, 4, 5, 6, 9, 10, 11조에서도 관련 용어를 삭제하거나 온마을배움터로 변경하여, 새로운 충북형 교육지구 정책과 사업으로서 ‘온마을배움터’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존 조례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에 대한 정의와 개정 조례의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정의가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온마을배움터’가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 ‘충북행복교육지구’, ‘교육생태계’의 의미를 흡수·통합하여 교육활동의 지역경계와 참여 대상이 확대된 의미를 담아 충청북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재구조화한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온마을

배움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4년 단위로 수립했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사회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온마을배움터 지정과 운영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호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온마을배움터 지정과 행정구역간 상호 개방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온마을배움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9조에는 기존의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온마을배움터의 구축과

교육활동, 실효성 있는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 내며 온마을배움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마을배움터 사업 추진의 실질적 중심 조직이라 사료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제2에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북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온마을배움터 사업으로 통합·흡수 되어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기하고자 지역단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충청북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지역 간 상호 개방과 연계를 통하여 교육지구 사업의 지역과 참여주체, 교육 대상이 확대된 ‘온마을배움터’ 정책으로 재구조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 관련 사전 설문조사 및 조례안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온마을배움터의 참여 대상이 대학과 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참여 대상의 목적과 교육활동 및 교육적 성과가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온마을배움터 정책의 교육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온마을배움터 지정 및 운영 시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 지정·설치와 운영, 지역별 온마을 배움터 상호개방,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온마을 배움터’ 정책 사업 추진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마을배움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원만한 소통과 내실 있는 행·재정적 지원,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실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함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 강화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으로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마을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3.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4. 공교육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성장과 조화를 추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온마을배움터”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별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
2.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학교 밖 배움터 조성 및 온마을 학습망 구축
3. 인적 자원 발굴을 통한 마을 연계 교육 기반 구축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 관련 연구 및 조사
6. 학교 연계 주민평생학습 지원
7.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8.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온마을배움터의 지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별 온마을배움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온마을배움터의 상호 개방)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온마을배움터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 마을, 대학, 기업,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온마을배움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온마을배움터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4. 온마을배움터 운영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5. 온마을배움터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6.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7. 그 밖에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관련 전문가, 마을주민 등을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온마을배움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본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본조신설 2015. 3. 27.]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19.] [충청북도조례 제4930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

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12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유지하면서 사업 운영의 행정구역 경계를 개방하는 온마을배움터로의 확장이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국 정책기획과장 김명숙